

# 2026년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모 요강

'26. 2. 11.(수)/ 시각예술본부 시각정보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공모개요

- (공모명) 2026년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모
- (공모기간) 공고일 ~ **2026년 3월 18일(수) 17시까지**
- (공모방식)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시행 및 운영
- (공모내용) 미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설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6년~2028년 (최소 2년~최대 3년 지원)
- (지원규모) 총 6억원, 6건 내외 선정
  - 단체당 연간 최대 **1.4억원** 지원 가능 / 자부담 10%
  - 자부담은 국고보조금 대비 10% 편성 필수
    - \* 연간 최대 2개 교육과정 지원 가능, 1개 과정 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 사업 마지막 연차는 연수 과정 운영 필수(외부 협력 운영 시 증빙서류 제출)
    - \*\*\* 수강생 수, 교육 시간, 연차별 교육 및 연수 과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전문인력 예시】 \*출처: 미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연구, p.105~107

구분	직종
미술 전시 기획업	전시기획자, 아트 핸들러 등
미술 시설 운영업	펀드레이저, 레지스트라 등
연구/출판/기록업	아카이스트, 비평가 등
디지털/기술업	아트 테크니션 등
미술 유통업	갤러리스트, 경매사 등
미술품감정/수복업	감정가, 보존 전문가 등

## □ 공모내용

-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 가능
  - (필수)(1차년도) 2026년 5월 1일 ~ 11월 30일
  - (필수)(2차년도) 2027년 3월 1일 ~ 11월 30일
  - (선택)(3차년도) 2028년 3월 1일 ~ 11월 30일

○ (지원대상) 미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 (단체) 대학교, 협회 등 교육 및 연수 과정 운영이 가능한 단체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단체

**【지원불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박물관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방보조금, 중앙문화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수령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 취소 가능

○ (지원조건) 아래 필수/권고 조항 확인 후 지원

구분	내용
운영	<p><b>【필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금 10% 책정 필수(신청한 국고보조금의 10%를 자부담으로 포함)</li> <li>• 교육 운영 시 수강료 유무료 여부 구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 교육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 시 본 교육 관련 사업에 활용(사전 계획서 제출 필수)</li> </ul> </li> <li>• 최근 3년('23~'25년) 이내에 미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실적 보유 시 증빙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증명서, 수강생 모집 홍보물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li> </ul> </li> </ul>
교육개설	<p><b>【필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분야별 초·중·고급·심화 등 <b>과정을 구분 개설</b>하며, 각 과정은 이론/실습 병행 필수</li> <li>• 감정 분야는 <b>시가와 진위 감정</b>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원 필수</li> <li>• 시가감정 교육 개설 시 <b>중급 또는 고급과정 중 1개 이상 포함</b> 필수</li> <li>• 미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지원단체의 <b>중장기 교육 운영 계획</b> 제출 필수</li> <li>• <b>연간 최대 2개 교육과정까지</b> 지원 가능(연수 과정 포함)</li> </ul> <p><b>【권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감정 교육은 “<b>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b>”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개설 권고</li> <li>• 아키비스트 교육은 “<b>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b>”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개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명시된 연구보고서는 공고문의 첨부파일 참조</li> </ul> </li> </ul>
교육시간	<p><b>【필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별 <b>교육시간은 50시간을 기본으로</b> 하며, 과정 특성에 따라 20% 내외로 가감 가능</li> <li>• 사업 마지막 연차에는 <b>연수 과정 포함</b> 필수</li> </ul>
수강생	<p><b>【필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정별 수강생 최소 20명 이상, 연수는 최소 5명 이상 포함</b>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고급·심화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50% 이내로 축소 가능</li> </ul> </li> <li>• 시가감정 교육 개설 시 '25년 예경 교육 수료생 우선 포함</li> <li>• <b>교육과정별 수강생 평가 절차</b> 운영 필수</li> </ul>

\* 지원 기간 내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에 한함

\*\* 공공 목적에 맞는 내용에 한하여 지원 예정이며, 필요 시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지원내용을 결정함

○ (지원내용) 교육 기획, 개설,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

목	세목	지원항목(국고보조금/자부담금)	비고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획자(책임강사) 인건비</li> <li>• 코디네이터 등 보조인건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대비 최대 20%</li> <li>- 2026 학술용역 단가 기준</li> </ul>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강의 사례비	
		• 자료수집 및 인쇄비	
		• 재료비(일회용품)	
	임차료(07)	• 공간/물품 임차료	
	일반용역비(14)	• 영상 제작 및 교육홍보 용역비	

\* 국고보조금은 1~2차로 나눠서 50%씩 지급, 1차 지급분 중간정산 완료 시 2차 지급 예정

\*\* 과세사업자는 사업비(국고+자부담금)를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 부가세는 0 순수 자비로 편성

## ○ (지원 불가항목)

구분	내용
선정주체 경상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자본적 경비	•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취득비 등
업무추진비	•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
여비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예비비	•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 등
기타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준비비 등), 보조금 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

## □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 미술 전문인력 교육 기획·개설·운영
- 예술인 관련 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준용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 성과공유회 등 참석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신고
-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교육 수료 및 서약서 제출
-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 표기(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순)
-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 (최소 70% 이상 참여)
- 사업 기간 중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 협조
- 미술 서비스업 조사(\*)(구)미술시장조사 설문 응답 필수
- 미술 저작권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추후 안내)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추후 안내)
- 매년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변경, 정산, 실적,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총사업비는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 유의사항

- 마감일(2026.3.18. 17:00)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자부담은 정률에 맞춰 필수 책정하며, 1차 지급분 중간정산 시 자부담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함
-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사업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 연차별 사업 평가에 의해 차년도 지원금이 가감될 수 있음
-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제외 및 국고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법 및 동법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교부 신청은 교육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사업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사용 불인정, 환수 조치함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기간 종료일은 교육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술인권리보

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기획자, 화랑 등)의 권리 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용역계약 체결 시 보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2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누리장터를 이용하여야 함

## □ 공모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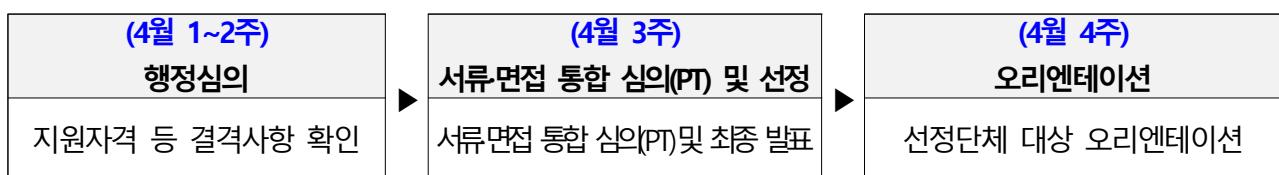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3월 18일(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 접수 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
  - \*\* 공모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권장
  - \*\*\* 반드시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제출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순번	제출서류	형식	방법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	
2	공모 지원신청서	hwp	
3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4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PDF	
5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PDF	
6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PDF	
7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8	[붙임5]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인서	PDF	
9	유사사업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 교육생 모집 홍보물 등)	PDF	
별도제출	PT(면접) 발표자료 (행정결격자 제외 후 자료제출 별도안내 예정)		첨부파일로 제출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 '2026년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모' 검색>신청서 작성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본 지원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 심의개요

-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면접 통합 심의
- (심의절차)



○ (심의지표)

심의지표	비중	세부지표
교육 기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	기획된 교육 과정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15)
		강사진의 전문성과 교육 내용의 차별성이 명확한가?(10)
		교육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는가?(5)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30%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에 전문성이 있는가?(15)
		유사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가 있는가?(10)
		수행 조직이 연차별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가?(5)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0%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가?(10)
		지원금 운용계획과 집행 일정이 적절한가?(10)
성과 관리 및 기대효과	20%	교육 성과 목표 및 측정 방안이 명확한가?(10)
		미술 전문인력 양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여 및 파급효과가 명확한가?(10)
		교육과정 종료 이후 미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출이 가능한가?

○ (선정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관련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 (이메일) [choojh97@gokams.or.kr](mailto:choojh97@gokams.or.kr)
  - \* 공모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이용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